

4.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정경제원공고 제1998-8호 1998. 1. 15.

주요 골자

- 가. WTO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출손실준비금·해외시상개척준비금을 폐지하고, 내·외산설비에 대하여 차등지원되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내·외산 차등없이 단일화하여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함.
- 나. 법인의 양수도를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주가 양도대상 법인의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함.
- 다. 지금까지는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10퍼센트로, 기타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25퍼센트로 하여 일반법인보다 우대하되 조세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12퍼센트로, 기타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28퍼센트로 상향조정하되 기타 공공법인도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라. 공공사업용 토지와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행 3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축소하고, 양도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2년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현행 30퍼센트 감면제도를 폐지함.

- 마.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임업용기자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바. 회사택시사업자에 대하여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적용 시한을 1998년 6월 30일까지로 단축함.
- 사.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최저한세의 세율을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종전의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산출세액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

개정 취지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는 한편,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주택회보